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0. 8. 27.(목) 10:00

#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교통건설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## 2. 제안이유

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(안 제2조의2)
- 나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 등 용어나 표현을 정비함(안 제명, 제4조 등)
- 다.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: 2020. 7. 23. ~ 2020. 8. 12.(20일 이상)
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해당 조문 내용을 수정·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,

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
- 안 제6조제3항의 조문 내용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수정하였으며
-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, 결산 및 의회의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
- 그 밖에 조문들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됨.

### 다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로굴착 및 도로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, 그 밖의 조문들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정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관련 법령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7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[전문개정 2011.5.30.]